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1. 20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1. 29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함.
- 생연1동사무소는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town영이 적절치 않으므로 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소요산관광지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유원시설 조성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예정 재산현황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	공시지가 (㎡당,원)	매 수 예정가 (천원)	소 유 자	비 고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생연 1동	미 정	미 정	미 정	1,980내외	미 정	267,570	미 정	주 민 자 치 센타
상봉암동	산38-2 일원	임 야	40,121	40,121	평균3,350	520,000	이선원의 1인	유원시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특히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000㎡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은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공유재산 취득예정 재산중 생연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은 부결하고 상봉암동 유원시설예정지 매입은 가결함.